

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3년    월    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이유

-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“지방자치단체의 혁신분권 담당기구 설치지침”에 의거 승인된 정원을 조정배치하고,
- 신규 행정수요의 기능보장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은 기구·정원 범위내에서 소요 인력을 증원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: 2,465명 ⇒ 2,484명 (증19명)
  - 집행기관의 정원 : 1,366명 ⇒ 1,383명 (증17명)
 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58명 ⇒ 60명 (증 2명)
  -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정원 : 변동없음

3. 의안전문 : 따로 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취 : 따로 붙임

##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호외의 부분중 “2,465명”을 “2,484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1호중 “1,366명”을 “1,383명”으로 하며, 동조 제4호중 “58명”을 “60명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구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<u>2,465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366명</u></li> <li>2. 소방본부·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: <u>997명</u></li> <li>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: <u>44명</u></li> <li>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<u>58명</u></li> </ol>	<p>제2조 (정원의 총수) .....  ..... <u>2,484명</u> .....  ....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.... : <u>1,383명</u>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.... : <u>60명</u></li> </ol>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**제103조 (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)** ①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,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- ⑤ (생략)

### □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

**제21조 (정원의 규정)**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
2. 본청·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

② - ④ (생략)